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6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3

Ⅰ. 개요

1.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6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현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본공제에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공제되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대기업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됨.

기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지원되며,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 추징됨.

또한, 정규직전환자와 육아휴직복귀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

아야 하며, 전환일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2년 2조 9,574억원, 2023년 3조 5,903억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4조 2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29,574	35,903	38,112	40,208

주 1)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우대공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추가 (김정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2025. 12. 31.</td><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우대공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추가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현행과 같음)</td></tr>
</table>

* 김정호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66)

□ 개정안은 우대공제 대상에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자립준비청년 고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 중 일정연령 경과 등으로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되어 연 1,994명 가량의 아동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

고 있음.

[연도별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인원]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9~2023년	9,970명	3,843명	767명	5,360명
연 평균	1,994명	768.6명	153.4명	1,072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고용률은 52.4%로 2020년(42.2%)에 비해 1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20~29세 청년 고용률 61.3%(2023년 11월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5.8%로 2020년(28.2%)보다 감소했으나, 청년 실업률 5.3%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상태]

(단위: %)

구분	계	취업자(A)	미취업자			실업률 (B/(A+B)
				실업자(B)	비경제활동	
2023	100	52.4	47.6	9.9	37.8	15.8
2020	100	42.2	57.8	16.6	41.3	28.2

자료 :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즉, 일반적인 청년에 비해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대공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키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상 우대공제 대상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1]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이미 청년 정규직근로자 유형에 속하여 우대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개정안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준비청년을 우대공제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인 자립준비청년이 우대공제 대상에 신규로 추가되는 효과는 있음.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다. 지원방식 유지 및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박정하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이연희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2025. 12. 31.</td><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30. 12. 31.(박정하의원안, 이연희의원안)

○ 시행일
- 2025. 1. 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26. 1. 1.(박정하의원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연희의원안)</td></tr>
</table>

* 박정하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02),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김정호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66), 이연희의원안 2024. 10. 29. 발의(의안번호 5001)

□ 4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지원방식을 유지하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김정호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안·이연희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하게 고용증가인원당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평가되었음.[2] 특히, 중소기업에서 비교적 뚜렷한 고용증대효과가 관찰되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 9.

가 있음.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1.4조원, 2033년 1.3조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20.2조원(연평균 2.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3년]

(단위: 조원)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4	-2.8	-4.0	-4.0	-4.1	-2.7	-1.3	-20.2	-2.9

자료: 예산정책처

둘째,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동 특례의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해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2025년에 심층평가를 거쳐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